

도일교육통신 제 2023 - 55 호

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

담당부서: 교무혁신부

담당자: 031-494-4167 http://doil.es.kr/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도일초등학교**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만들어갑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대 상	분량/구성	내용 구성	영상보기
학부모용	15분 17초 (전문가 대담)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하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안내 https://youtu.be/cXwwqkvjMfM 링크됨	



2023. 4. 7

도일초등학교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연수자료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1.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육활동 침해의 예시

폭행, 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폭력 은폐사실을 알려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 라고 말한 경우
 - ·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것처럼 한 경우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
- 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범죄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모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① 공무집행방해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 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 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9)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추가 (2023.3.23.목) 개정 시행됨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4.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도 위험해짐
- ·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 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가정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필요함
-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서로 존중하고 윈윈(win-win)하는 상관관계
- · 교원과 학부고의신뢰와 존중: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 →학생의 학습의 보장권보장,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 교원과 학부모: 자녀(학생)을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음
-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가 중요

학생의 행복이 교사의 행복입니다. 부모의 마음,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 교권침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 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 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७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교육 및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서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의 활용, 학부모회 참여, 학교홈페이지 방문,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자료 열람,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TIP: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 선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교육활동침해,

(보호자용)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 고조의 3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시 」 제 노조



우리 아이가 실수한 거에요. 당장 정수를 울려 주세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모두 안돼요.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고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사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직접적인 폭행 (폭행시도도 포함)



온라인 명예훼손



욕설 등 모든 공격적 행위

보호자와 교원의 목적은 같아요!

감정을 가라앉혀요.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전에

학교 방문 절차



사전에 방문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방문증을 패용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23.3.23.)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 적극 대응하겠습!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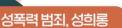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